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안내 —

'25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요건('26년 3월 신청)

- ①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신청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 분	'25년 하반기분 신청 요건	'25년 하반기분 지급·정산
가구원기준일	'24.12.31.	'25.12.31.
재산기준일	'24.6.1.	'25.6.1.
소득기준	'24년 연간 총소득	'25년 연간 총소득
장려금 산정대상 소득	'25년 연간근로소득	'25년 연간근로소득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4년도 기준으로 신청하나, '25년도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으로 심사하여 '26년 6월말에 지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② 또한, 다음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 사업자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반기별 지급 및 정산 (2026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5년 하반기 소득분	'26.3.1.~'26.3.16.	'26년 6월 중	연간산정액-상반기 지급액
'26년 상반기 소득분	'26.9.1.~'26.9.15.	'26년 12월 중	예산 연간산정액의 35%

- ①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로자: $\text{상반기총급여} + (\text{상반기총급여} \div \text{상반기 근무월수}) \times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text{상반기총급여} \times 2$

- ② 하반기분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실제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③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 추가 지급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 환수(향후 10년간)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안내대상 여부 및 신청요건을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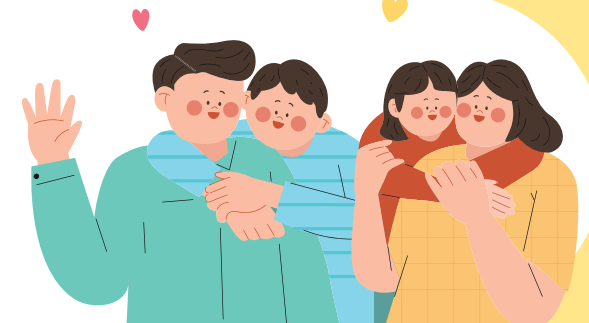
신청요건



2026년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안내



근로장려금(ETIC)·자녀장려금(CTC)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① ~ ③)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

1 가구유형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구분	단독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①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②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③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 ④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①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②·③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종합·퇴직·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 ④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2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4,400만 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7,000만 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산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승용차·전세금·예금·주식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026년도 장려금 신청기간

- '25년 귀속 하반기분 >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까지
- '25년 귀속 정기분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 '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까지
- '26년 귀속 상반기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선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국민비서, 카카오톡/네이버/문자)

☞ 첨부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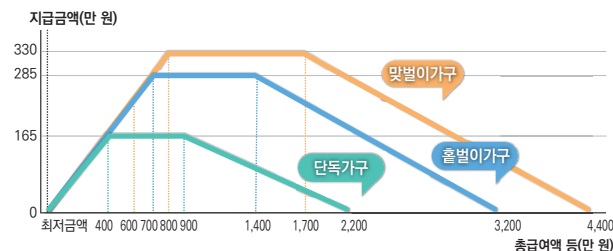
③ 홈택스(PC, 모바일)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직접입력 신청

근로장려금 수급모형



☞ 근로·자녀장려금 예상금액 확인방법

- ① 홈택스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신청 → 신청확인(취소)
- ② 손택스(모바일앱)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신청 → 신청하기(신청확인·취소 등)
- ③ ARS(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선택(안내대상자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해당없음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7,000만 원 미만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신청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이란?

-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 ☞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PC, 모바일),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신청 유의사항

- ☞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더라도, 다음해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 ☞ 자동신청 결과는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만약 소득·재산 내역이 국세청 자료와 달라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자동신청 사전 동의는 신청 안내 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당해연도

향후 2년간

자동신청 동의



장려금 신청 시 동의
• 2년 내 신청요건 충족 시 자동신청

안내대상 포함 ○

자동신청 ○

▶ 지급요건 충족 시, 직접 지급계좌로 입금 예정

안내대상 포함 X

자동신청 X

▶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자동신청결과 확인하고, 요건 충족하면 직접 신청 가능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